

## 거소투표신고 안내문

2016. 4. 13.(수)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
**□ 신고기간:** 2016. 3. 22. ~ 3. 26.(5일간)

**□ 신고서식:** 가까운 구·시·군청,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

※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nec.go.kr>)의 『초기화면』 또는 『‘분야별정보(선거정보)’ 메뉴의 ‘자료실’』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

**□ 신고대상**

구 분	신 고 대 상 자
거소(주택등 거주하는 곳) 에서 투표할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</li> <li>② 병원·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·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·수감된 사람 *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·간호사·교도관 등은 제외</li> <li>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</li> <li>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</li> <li>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(해당 지역 없음)</li> </ul>

**□ 신고서 작성 및 발송**

-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(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)하여 2016년 3월 26일(토)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(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지)가 되어 있는 구·시·군청 또는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(또는 직접제출)하여야 합니다.
-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, ③의 경우(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)에는 통·리·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(2016년 3월 25일)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